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| | |
|------|------------|
| 등록번호 | 교통정책과-496 |
| 등록일자 | 2015.1.9. |
| 결재일자 | 2015.1.12. |
| 공개구분 | 대시민공개 |

| | | | | |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|
| 주무관 | 교통정책팀장 | 교통정책과장 | 안전교통국장 | | |
| 조윤희 | 황관웅 | 장원석 | 전결 01/12 조흥기 | | |
| 협조자 | | | | | |

-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-

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·징수 계획

■ 추진기간 : 2015. 1. 1 ~ 2015. 12. 31

■ 추진방향 : 징수율 향상을 통한 세입 증대

- ◎ 과세자료 정비 및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부과업무 철저
- ◎ 정확한 민원안내 및 홍보활동 다양화로 납부의식 제고
- ◎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부과로 민원발생 최소화
- ◎ 체납유형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징수계획 수립
- ◎ 지속적인 체납자료 관리 및 체납처분 철저

■ 추진일정

- ◎ 1 ~ 7월 : 과세자료(신축, 소유권이전 등) 정비 및 시설물 사용실태 현장조사
- ◎ 2 ~ 6월 : 체납징수계획 수립 및 집중 체납정리 실시
- ◎ 8 ~ 9월 : 2015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·실사용 신고 접수처리
- ◎ 10 ~ 12월 : 2015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·징수 및 체납관리

2015. 1.

강 남 구
(교통정책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| 검토분야 | 확인 및 적시사항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관련 규정 및 근거 | 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•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|
| 추진 경위 |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• 추진경위 : 대도시 교통 혼잡 완화 대책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부과·징수 및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|
| 예산 사항 |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근거 : 2015. 강남구 세출예산 지침 •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|
| 수혜자 및 범위 | 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• 해당사항 없음 |
| 분야별 검토사항 [계속 :] [신규 :] | 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O)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O)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O)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O) ⑤ 시장조사 ----- () 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)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O)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)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) •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|
| 타 기관 사례 | 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•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사항 |
| 전문가 자문 |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• 해당사항 없음 |

-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-

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·징수 계획

대도시 교통 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

I 추진 근거

-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
-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

II 추진 현황

□ 부과개요

- 부과대상 : 연면적 1,000㎡ 이상인 시설물(주거용 제외) 소유자
- 대상시설물 : 4,830개소 (7,964건/16,000백만원 부과 예상)
- 부과기간 : 2014. 8. 1 ~ 2015. 7. 31
- 납부기간 : 2015. 10. 16 ~ 2015. 10. 31
- 산정기준 : 시설물 바닥면적의 합 × 단위부담금(원/㎡) × 교통유발계수

□ 부과·징수 현황

[단위 : 건/백만원, 2014.12.31기준]

| 구 분 | 부과액 | | 징수액 | | 체납액 | | 징수율 (금액기준)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
|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 |
| 합 계 | 176,581 | 203,360 | 174,771 | 201,954 | 1,810 | 1,406 | 99.30% |
| 2014년도 | 7,964 | 15,753 | 7,516 | 15,549 | 448 | 204 | 98.70% |
| 2013년도 | 11,769 | 16,162 | 11,581 | 16,006 | 188 | 156 | 99.03% |
| 2012년도 이전 | 156,848 | 171,445 | 155,674 | 170,399 | 1,174 | 1,046 | 99.38% |

□ 징수율 및 징수교부금 현황

[단위 : 건/천원, 2014.12.31기준]

| 구 분 | 징수현황 | | | 징수교부금 |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|
| | 현년도 징수율 | 과년도 징수율 | 과년도 압류율 | 교부율 | 교부액 | |
| 2014년도 | 95.62% | 55.15% | 96.01% | 29.6% | 4,792,592 | |
| 2013년도 | 94.23% | 37.51% | 95.09% | 29.3% | 4,622,840 | |
| 2012년도 | 94.82% | 30.88% | 93.63% | 28.3% | 4,535,949 | |

※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징수금액의 일정비율 (최대 30%) 을 자치구에 교부

□ 운영인력

- 총원 : 4명 (시간제임기제공무원 3명 포함)
- 시간제임기제공무원 현황

| 연번 | 성 명 | 계약기간 | 최초계약일 | 담당업무 |
|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한 수 연 | 2014.03.01~2015.02.28 | 2012.08.13 | 개포,논현,도곡,수서,세곡,일원,청담동 |
| 2 | 김 윤 정 | 2014.03.01~2015.02.28 | 2012.12.12 | 대치,신사,삼성,압구정 |
| 3 | 임 지 원 | 2014.03.01~2015.02.28 | 2012.03.02 | 역삼동 |

※ 2014년 근무성적평가(2015. 1월) 후 채용연장계약 예정 (2015. 3. 1)

Ⅲ 추진 방향

추진목표

징수율 향상을 통한 세입 증대

납기 내 징수율 - 95% / 과년도 징수율 - 40% / 압류율 - 96%

추진방향

◎ 2015 부담금 징수율 및 징수금액 향상

- 과세자료 정비 및 누락세원 발굴로 부과업무 철저
- 정확한 민원안내 및 홍보활동 다양화로 납부의식 제고

◎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징수율 향상

- 체납유형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징수계획 수립
- 지속적인 체납자료 관리 및 체납처분 철저

세부계획



IV 징수율제고

1 과세자료 정비 및 누락세원 발굴

부과대상 시설물 변동내역 정비

- 추진기간 : 2015. 1 ~ 7월
- 추진대상 : 2014. 8월 ~ 2015. 7월 사용현황 변경 시설물
(신축·증축·용도변경·폐말소·소유권이전 등)
- 추진방법 : 세움터(건축행정시스템) 상의 시설물 변동자료를 수합하여 부과시스템(새울) 입력
※ 누락분 발생 시 즉시 수시 부과 예정

시설물 사용실태 현장조사

- 추진기간 : 2015. 4 ~ 7월
- 조사대상 : 2,415개 시설물 예정 (부과대상 시설물의 50.10%)
 - 청담, 세곡, 대치, 역삼동 등 : 약 2,300 개소 예상
 - 2014. 8월 ~ 2015. 7월 신축시설물 : 약 50 개소 예상
 - 2015년 부담금 법령감면 대상 시설물 : 약 160개소 예상
- 조사방법 : 현장조사원을 채용하여 시설물 사용실태(미사용, 새울 등록된 용도의 사용 등)를 방문 조사

- 추진일정
 - 4월 : 현장조사원 4명채용(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채용)
 - 5 ~ 6월 : 시설물 현장조사 및 제도 안내(미사용·실사용 신고 등)
 - 7월 : 조사결과 분석 및 부과시스템(새울) 반영

2 2015년 정기분 부과·징수

■ 부담금 사전 조정신청 접수

- 추진기간 : 2015. 8 ~ 9월
- 추진목적 :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「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(실)사용 신고 안내문」을 발송하여 관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징수율 향상을 도모
- 접수대상
 - 미사용 신고 접수 : 부과기간 내 30일 이상 공실인 시설물
 - 실사용 신고 접수 : 건축물대장(새울) 상의 용도 외 사용 시설물
- 추진일정
 - 8. 10. : 부담금 부과 및 미(실)사용 신고 안내문 발송
 - 8 ~ 9월 : 미(실)사용 신고 접수 및 부담금 사전 조정 처리

■ 2015년 정기분 부과 및 징수

- 추진기간 : 2015. 9월 ~ 11월
- 추진대상 :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대상자
- 납부기간 : 2015. 10. 16 ~ 2015. 10. 31
- 추진일정
 - 9월 :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납부기간 사전안내문 발송

- 10월 : 교통유발부담금 정기고지서 등기우편 발송 (10. 10)
 등기 고지서 반송자에 주소추적 및 일반우편 발송 (10. 20)
 고지서 미수령 및 반송자에 대한 공시송달 (10. 31)
- 11월 : 체납독촉고지서 발송 (11. 15)

■ 홍보 매체 다양화를 통한 부담금 납부 의식 제고

- 추진기간 : 2015. 5 ~ 10월
- 홍보방법
 - 안내문 제작 발송 : 부담금 부과 및 납부기간 안내문 제작 발송
 - 강남구청뉴스, 문자전광판 및 구청홈페이지(트위터, 블로그 등) 게시
 - 시설물 현장조사 시 시설물 관리자에게 안내문 배포

■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실시

- 추진기간 : 2015. 1 ~ 12월 (매월 넷째주 금요일)
- 추진대상 :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담당 4명(시간제임기제공무원 포함)
- 회의내용
 - 2015 법령 개정내용 및 세부지침, 시스템 활용법 등 실무교육
 - 부과·징수현황 모니터링 및 민원처리 현황 공유, 친절 교육 실시

V 체납 징수 관리

■ 체납유형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징수계획 수립

- 추진기간 : 2015. 2 ~ 4월
- 추진대상 : '96 ~ '14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
- 추진내용
 - 체납자 유형별(법인, 내국인, 외국인 등) 체납사유를 분석하여

맞춤형 체납징수계획 수립

- 상습·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등 집중관리
- 공탁금, 출자증권 등 출자재산 압류,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 확보등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도입

■ 체납관련 자료 정비 및 체납처분 철저

- 추진기간 : 2015. 2 ~ 6월
- 추진대상 : '96 ~ '14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
- 추진내용
 - 지속적인 체납정보 관리 (체납자 주소, 보유재산 등) 를 통한 철저한 채권확보 (분기별 체납자 재산조회 실시)
 - 분기별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문·압류통지서 발송
 -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이행
- 추진일정
 - 2 ~ 4월 :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발송
 - 5 ~ 6월 :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체납처분 이행

※ 추후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목표 수립 및 세부지침 (『2015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·징수 계획』 , 『2015년 교통유발부담 체납정리 계획』) 시달 시 개별 세부계획 수립 예정

VI

월별 추진계획

| 월별 | 세 부 추 진 계 획 | 비 고 |
|-----|---|-----|
| 1월 | ▶ '14. 8월 ~ 12월 시설물 변동내역 조사 (신축·용도변경·멸실 등) | |
| 2월 | ▶ '12 ~ '14년 체납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발송 (1차) | |
| 3월 | ▶ '96 ~ '12년 체납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발송 (2차) | |
| 4월 | ▶ 시설물 현장조사원 (기간제근로자) 채용 ▶ '15년 체납 집중정비 계획 수립 | |
| 5월 | ▶ 시설물 현장조사 (신사·논현·압구정·청담동) ▶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 압류 처분 | |
| 6월 | ▶ 시설물 현장조사 (도곡·개포·일원·수서·세곡동) ▶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 압류 처분 | |
| 7월 | ▶ '15. 1월 ~ 7월 시설물 변동 실태조사 (신축·용도변경·멸실 등) | |
| 8월 | ▶ 시설물 미사용·실사용 신고서 발송 및 접수 | |
| 9월 | ▶ 부과 및 납부기간 사전 안내문발송 및 미사용·실사용 신고 접수 ▶ 적기 고지서 도달을 위한 납세자 주소정비 ▶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| |
| 10월 | ▶ '1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·징수 ▶ 정기분 고지서 반송자 주소추적·재발송 및 공시송달 | |
| 11월 | ▶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자료 작성 ▶ '15년 체납자 독촉고지서 발송 ▶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 압류 처분 | |
| 12월 | ▶ '1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·징수 현황 점검 | |

VII

행정 사항

□ 2015년 인센티브 평가 목표 수립 및 부과징수·체납정비 계획

수립·통보 :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

□ 관련부서 협조

- 신축·증축·멸실·용도변경·가설건축물 및 시설물 소유권 변동 현황 [건축과]
- 일반숙박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현황 [관광진흥과]
- 주거용 감면 시설물 전입신고 현황 [자치행정과, 전산정보과]
-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현황 [출입국관리소]
- 우리구 홈페이지, 문자전광판 및 강남구청 뉴스 게시[공보실, 전산정보과]